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23
----------	-------

발의연월일 : 2026. 7. 23.

발 의 자 : 이춘석 · 윤준병 · 김의겸
朴芝源 · 임미애 · 서삼석
김성범 · 정준호 · 안호영
양부남 · 박해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2024.1.16.)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규정됨.

한편 현행법 개정 당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도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 소비자와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특성상 소급적으로 해당

종사자들에게까지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된 종사자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2제2항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제한 사유 확인에 관한 특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생략)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② ----- ----- ----- ----- ----- ----- <u>--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u> ----- ----- ----- -----.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u>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